종전 개정 ￭ 신성장･원천기술 대상 - 12대 분야 235개 기술 ①∼⑫ ￭ 신성장･원천기술 대상 확대 - 13대 분야 260개 기술 (추가) ⑬ ‘탄소중립’ 분야 신설 ￭ (공제율)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.2% 16~60일 지급 0.1% - (탄소중립) 탄소포집･활용･저장(CCUS), 수소, 신재생에너지, 산업공정, 에너지 효율･ 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(신규 19, 확대 4) CCUS(7) 연소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(8) 그린･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(12)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(11)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･수송(10)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- (기타) 미래차･바이오･희소금속･자원순환 등 기술 8개 \*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스템,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,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,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￭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: 선정일부터 최대 3년 \* 2022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